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2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 의 자 : 최 승 태 의원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상시출장 여비 지급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의 상한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액여비 일괄 지급대상 업무 구체화(안 제2조제3항)

나. 여비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금 상한 상향 조정(2배→5배)(안 제4조제1항)

다. 맞춤법 등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받쳐서 : 덧붙임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마.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8. 3. ~ 8. 7.

○ 제출방법 : 방문(주말·공휴일 제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기재내용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의회운영 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10

- F A X : 031-790-6529

- 홈페이지 : <https://council.hanam.go.kr/> (의안정보 → 조례안 예고)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을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수행업무 담당 비서와 차량 운행 담당자로 하며,”로, “필요한”을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 ----- 범위----- ----- 지급할 -----. ② (현행과 같음) ③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수행업무 담당 비서와 차량 운행 담당자로 하며, ---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u>하남시의회 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u>의장</u> ----- ----- ----- ----- -----. ② ----- ----- 영 ----- -----.
제4조(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제4조(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생략)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